

2017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 개최

우리는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통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보행 뿐만 아니라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활도로(집 주변 도로)인 마을길 보행환경을 시민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보행환경개선 시민공모전을 개최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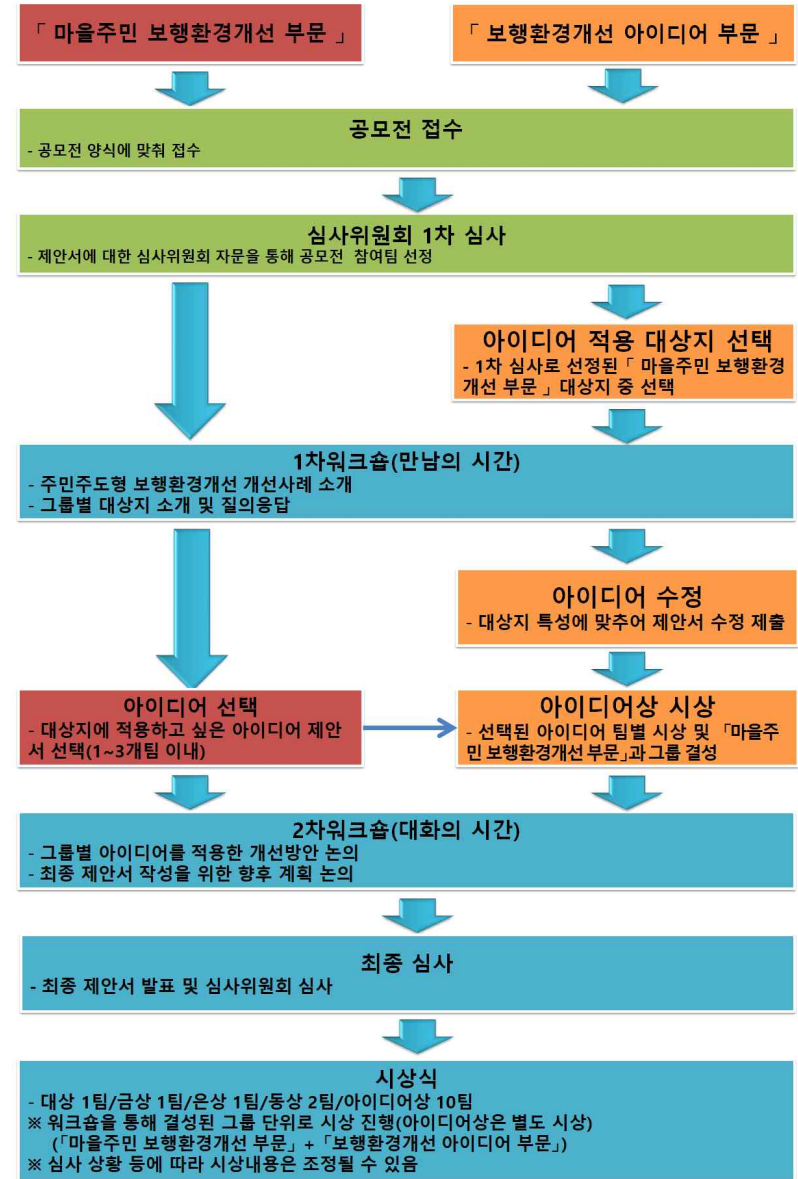
1. 공모명 : 「2017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
2. 공모주제

<p>‘생활도로 보행환경 개선’ 제안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중심의 마을길, 주민들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하고 불편한 우리 마을길의 보행환경... 그동안 참고만 있으셨나요? ○ 우리의 생활 터전인 마을길 이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길로 바뀌어야 합니다. ○ 거주하고 계신 곳의 마을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주민들, 또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시민들 모두 「2017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에 참여해 주세요.

3. 공모 분야

<p>1. 「마을주민 보행환경개선 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환경개선 아이디어 부문」과 결합하여, 거주하고 계신 마을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마을주민 	<p>2. 「보행환경개선 아이디어 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주민 보행환경개선 부문」의 대상지에 적용할 아이디어 제공이 가능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
---	--

4. 공모 진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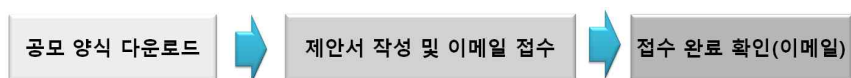
5. 응모 자격

구분	1. 「마을주민 보행환경개선 부문」	2. 「보행환경개선 아이디어 부문」
①응모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환경 개선을 원하는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마을주민 ○5인 이상 팀 단위로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주민 보행환경개선 부문」의 대상지에 적용할 아이디어 제공이 가능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2인 이상 팀 단위로 참가
②제안대상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내 행정구역으로 제한함 - 자동차 중심의 도로 환경으로 보행 안전성 및 쾌적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도로 - 단순 도로 재포장이 아닌 보·차도 분리, 단절된 보도연결 등 보행자중심으로의 시설개선 - 보행량이 많은 지역에 대한 도로공간재편(차로폭 축소, 보도신설 및 확장) 등 ※ 본 시민공모전 수상으로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은 도로는 재응모 불가 ※ 보행환경개선지구 및 보행자우선도로로 이미 지정된 도로는 응모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대상지역에 대한 제한 없음 ※ 생활도로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 제시(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되어 사용하는 양방 2차로 이하 도로)

※ 팀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 1인이 2개 이상의 팀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문별 중복 참여 불가

6. 접수 절차



7. 공모양식(아래방법 중 택1)



※ 공모양식 붙임1,2 중 해당부문 양식 다운로드 후 제출

8. 작성 유의사항

응모분야	
1. 「마을주민 보행환경개선 부문」	2. 「보행환경개선 아이디어 부문」
○주거지 주변 생활도로(양방 2차로 이하)를 대상으로 제안	○생활도로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 제안
	○아이디어는 3개 이내로 작성
	○향후 결합하는 「마을주민 보행환경개선 부문」의 대상지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 글, 그림, 사진 등을 공모 양식에 맞추어 작성

9. 접수 방법

○ 접수는 이메일로만 받음

- 접수기간 : 2018년 1월 2일(화) ~ 16일(화), 15일간

- 이메일 접수처 : ygh@greentransport.org

※ “접수 완료” 메일 확인(접수완료 메일을 못 받은 경우 사무국에 필히 문의)

10. 공모전 설명회

○ 공모전의 원활한 참여를 위한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8년 1월 4일(목) (예정)

- 방 법 : 유튜브 채널 및 페이스북 페이지에 영상 업로드

○ 설명회 주요 내용

- 공모전의 취지,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진행절차 안내

※ 공모전 진행관련 질의응답은 댓글로 진행

시청방법 ①	<p>유튜브 접속 → 검색창에서 '녹색교통운동' 검색 → '녹색교통운동' 채널 선택 → '2017 걷는 도시 서울 시민공모전 설명회' 동영상 선택</p> <p>※ 링크 : https://goo.gl/FExpyT</p>
시청방법 ②	<p>페이스북 접속 → 검색창에서 '녹색교통운동' 검색 → '2017 걷는 도시 서울 시민공모전 설명회' 동영상 선택</p> <p>※ 링크 : https://goo.gl/iR9Dv9</p>
설명회 질의응답	<p>- 동영상에 댓글로 질의 작성시 댓글로 답변</p> <p>※ 질의응답기간 : 2018년 1월 4일~12일까지 (기간 이후는 접수 이메일로 문의)</p>

11. 공모전 접수 이후 진행절차

1) 심사위원회 자문

- 공모전 참여팀 선정 : 2018년 1월 17일(수)~23일(화)
- 공모전 참여팀으로 선정시 개별 통지

응모분야	1. 「마을주민 보행환경개선 부문」	2. 「보행환경개선 아이디어 부문」
참여 제외	○공고문의 응모자격에 맞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정성적 평가를 통해 공모전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평가시 고려사항	○실현가능성, 활용성(적합성), 안전성(편의성), 창의성 항목 정성 평가 ※실현가능성, 활용성(적합성)중심 평가	○창의성, 안전성(편의성), 활용성(적합성), 실현가능성 항목 정성 평가 ※창의성, 안전성(편의성)중심 평가
기타 사항	○5개팀 이내로 참여팀 선정 ○문제점에 적합한 개선방안 수립 및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조언(공모전 참여팀으로 선정시 심사위원회 자문 전달)	○「마을주민 보행환경개선 부문」 참여팀 수의 5배수 이내로 참여팀 선정

2) 아이디어 적용 대상지 선택 : 2018년 1월 24일(수)~25일(목) (예정)

- 「보행환경개선 아이디어 부문」 팀이 아이디어 적용 대상지 선택
- 「마을주민 보행환경개선 부문」 제안서 온라인 공유

3) 1차 워크숍(만남의 시간) : 2018년 1월 27일(토) 오후2시 (예정)

- 주민주도형 보행환경 개선사례 소개
- 그룹별 「마을주민 보행환경개선 부문」 제안서 소개 및 질의응답 (대상지 특성, 문제점, 개선 방향 등)

4) 아이디어 선택 : 2018년 2월 3일(토)~2월 5일(월) (예정)

- 「보행환경개선 아이디어 부문」 수정 제안서 제출(1월 28일(일)~2월 1일(목))
- 대상지에 적용하고 싶은 아이디어 제안서 선택(1~3개팀 이내)
- 선택된 「보행환경개선 아이디어 부문」 팀에 아이디어상 시상
- 아이디어상 수상팀 「마을주민 보행환경개선 부문」 과 그룹 결성

5) 2차 워크숍(대화의 시간) : 2018년 2월 8일(목) (예정)

- 그룹별 아이디어를 적용한 개선방안 논의
- 최종 제안서 작성을 위한 향후 계획 논의

6) 최종 제안서 제출 : 2018년 2월 9일~21일 (예정)

- 워크숍 내용 및 이후 진행 사항 정리, 제출

7) 최종 심사 : 2018년 2월 23일(금) (예정)

- 최종 제안서 발표 및 심사
- 심사는 심사위원회의 정성적 평가로 진행
- 접수 산정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평균으로 산출(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세부 심사항목(안)		배점
실현 가능성	-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기본 목적에 충실한가? - 주민동의 또는 협의체 구성(안)등의 운영 아이디어 또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주민간의 소통에 의해 의사결정이 원활이 이루어 졌는가? - 개선계획과 실행과정에서 주민, 시민의 참여도가 얼마나 높은가? - 개선사업의 비용의 적절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이 고려되었는가?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주민, 행정기관 협의는 어느정도 진행되었는가?	25
활용성 (적합성)	- 아이디어 제안으로 인한 추가적인 기대 효과가 있는가? (지역주민활동 활성화 등) - 도로의 특성에 적합한 아이디어인가? (지하보도, 상가지역 / 대로, 중간소로, 소로, 골목길등) - 핵심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범위는 적절한가?	25
안전성 (편의성)	- 보행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개선 아이디어인가? -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안되었는가? - 보행 시민들의 불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덜어주었는가?	25
창의성	- 제안된 아이디어가 독창적이거나 창의적으로 기존 개선사업과 다른 새로운 시도가 있는가? - 참신한 보행환경 개선 아이디어인가?	25

※ 세부 심사항목(배점 포함)은 심사위원회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5) 시상식 : 2018년 2월 (예정)

- 시상내역 : 본 시상 - 5그룹 총 650만원 시상
별도시상(아이디어상) - 10개팀 총 200만원
- 진행내용 : 공모전 진행과정 안내, 우수작 발표, 향후계획 등 발표

구 분	시상인원(그룹)	상금(원)	비 고
대 상	1	3,000,000	서울시장 상
금 상	1	1,500,000	서울시장 상
은 상	1	1,000,000	서울시장 상
동 상	2	각 500,000	서울시장 상
아이디어상	10	각 200,000	-

※ 워크숍을 통해 결성된 그룹 단위로 시상 진행

(아이디어상은 「보행환경개선 아이디어 부문」 만 별도 시상)

※ 접수 상황과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내용은 조정될 수 있으며, 시상금은 “현금”과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섞어서 지급

6) 공모전 전체 일정 안내

세부 추진 일정	일정
· 공모전 접수	2018.1.2.(화)~1.16.(화)
- 온라인공모전설명회	2018.1.4.(목)온라인개재
· 심사위원회자문	2018.1.17.(수)~1.23(화)
· 「보행환경개선부문」 대상지선택	2018.1.24.(수)~1.25(목)
· 1차워크숍(만남의시간)	2018.1.27.(토)오후2시
· 「마을주민보행환경개선부문」 아이디어선택	2018.2.3.(토)~2.5(월)
· 2차워크숍(대화의시간)	2018.2.8.(목)
· 최종제안서제출	2018.2.9.(금)~2.21.(수)
· 최종심사	2018.2.26.(월)
· 시상식	2018.2.

※ 공모전 진행 상황에 따라 진행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개별통지해 드립니다.

12. 공모전 수상작 활용방안

- 수상작 중 일부는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진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우선도로 등) 심사대상으로 우선 검토(수상순위 무관)

13. 기타 유의사항

- 공모주제에서 벗어나거나 공모양식에 맞지 않는 제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온라인 응모에 제안서는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함.
- 타 공모전 수상작 혹은 유사한 작품, 타인의 저작물·명의 도용 등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상한 후에도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상금을 환수함.
- 작품 응모 시 응모자 정보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공모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우수한 작품이 없을 경우 시상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일한 지역에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복수로 접수될 경우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제안만 인정함.
- 향후 활용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다소 수정될 수 있음.
- 본 공모전 아이디어의 소유권 및 활용과 관련된 기준은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특허청, 2013년 12월 제정)에 따라 적용(별첨 참조)

14. 문의처 :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 사무국(녹색교통운동)

- 직통☎ 070-8260-8602, 대표☎ 02)744-4855
- e-mail : ygh@greentransport.org

※ 전화문의 가능시간 평일 10시~18시

(별첨)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특허청, 2013년 12월, 제정)에 따른 본 공모전 아이디어 소유권 및 활용시 적용사항

-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에 있다.
단, 주최측의 책임하에 다수의 평가단이 응모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선·발전시킨 경우, 그 변경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제안자, 주최측 및 평가단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 소유 등 소유권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아이디어 제안자의 원래 아이디어 및 이에 대한 지식 재산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시연·발표, 안내책자·리플렛·작품집 배포, 박람회·전시회 전시 등을 통해 공중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디어는 특허법상 ‘공지된 발명’에 해당됩니다.
아이디어가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는 공공의 소유가 되어 아이디어 제안자(발명자)라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추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특허를 받고자 하는 아이디어 제안자(발명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특허 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실용신안 : 12개월, 디자인 : 6개월]
- 주최측은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보안장치·보안규정·비밀유지약정 등 응모된 아이디어의 비밀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 주최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최측은 그 제3자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다.
 - ①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
 - ② 응모된 아이디어의 개선 및 발전
 - ③ 기타 공모전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수행

- 아이디어 제안자는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주최측에 요청할 수 있으며, 주최측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응모된 적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 경우 주최측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폐기한다.
- 아이디어 제안자는 아이디어를 응모한 날부터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 이후 1년 이내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의 반환을 주최측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최측은 제출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응모된 아이디어가 물리적 형체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주최측은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다.
- 주최측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를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한다.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갖고 주최측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최측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통상실시권」 및 「지식재산권 양도 등에 대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4개월동안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협상권”이라 한다)」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주최측이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경우, 통상실시권의 사용대가, 실시범위, 사용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주최측은 우선협상권을 행사할 때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주최측에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양도등을 승낙한다. 다만, 주최측이 제시한 대가가 불합리하거나 이보다 유리한 조건을 타인이 선의로 제시하거나 또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아이디어를 직접 실시하고자 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최측의 우선협상권 행사에 관한 합리적인 대가는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합의하여 선정된 기관이 평가한 가치로 정한다.
-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분쟁이

- 발생할 경우,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는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주최측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조정기관, 중재기관, 법원 등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주최측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